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합회의 회원 자격 확대 및 실태조사 주기 조정 등>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46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 확대(안 제2조 및 제71조 등)	3
2.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 변경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요청권 명확화 (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	7
3. 조합원이 아닌 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비율 제한 (안 제46조 후단 신설)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2.

다. 회 부 일 : 2025. 6.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각각 3년 및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협력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변경하고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 운영의 상호성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 확대(안 제2조 및 제71조 등)

현 행	개 정 안
○ 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제2조제2호)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제71조) -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필요 ※ 해당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114조)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제115조의2·제115조의4)에도 동일하게 규정	○ 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회를 말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안 제71조) -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 (연합회를 포함한다)이 발기인이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필요 ※ 해당 개정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안 제114조)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안 제115조의2·제115조의4)에도 동일하게 적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를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로 정의하면서,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는 다수의 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현행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거나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단체에 그칠 수밖에 없음.

개정안을 통해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상위 연합단체가 현행법상 조직에 포함됨으로써 법정 연합조직으로서 위상을 획득하고 협동조합 정책의 대정부 파트너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상위연합회 설립으로 연합회 간 또는 연합회 회원 협동조합 간 교류와 연대가 촉진될 뿐 아니라 연합회의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연합회 설립 허용에 따른 “상위연합회-연합회-협동조합”의 수직적 계열화가 개별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²⁾

현행법은 자주·자립·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³⁾으로 하고 있는데, 규모화된 상위연합회의 위상과 영

2) 기획재정부는 연합회에 다른 연합회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상위 연합회의 난립과 기득권 경쟁 등으로 개별 협동조합의 공동이익 도모라는 연합회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수직적 계열화에 따른 개별 협동조합의 독자성 감소 및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력 확대는 회원인 개별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설립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상위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

특히 개별법상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와 달리 영위 사업의 자율성이 큰 현행법상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⁴⁾에 있어서 규모화된 상위연합회의 영향력 확대는 개별 협동조합의 자율적 사업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연합회 가입이 자율적이라고 할지라도 규모화된 상위연합회가 존재할 경우 연합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개별 협동조합의 독자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4)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수행 가능한 사업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영위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협동조합연합회”란 <u>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u>를 말한다. 3. (생략)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u>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u>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u>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u>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u>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u>----- -----<u>제71조</u>-----<u>연합회</u>-----. 3. (현행과 같음) 4. -----<u>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u>----- -----<u>제114조</u>----- --<u>연합회</u>-----. 5. ----- -----<u>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u>----- -----<u>제115조의2에 따라 설립된</u>-----.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u>협동조합이</u>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 ----- ----- -----<u>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u>사회적협동조합</u>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u>조합</u>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 이 법에 따른 <u>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u>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u>설립된 조합</u> (생략) ② (생략)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 ----- -----<u>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u> <u>이</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 ----- ----- -----<u>조합 등이</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 ----- ----- ----- -----. -----<u>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u> ----- -----<u>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u>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 변경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요청권 명확화 (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

가.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11조제7항)

현 행	개 정 안
○ 협동조합 실태조사 -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협동조합 실태조사 -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협동조합 실태조사⁵⁾의 실시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1조⁶⁾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5)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협동조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 설문조사와 행정자료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설립·구성원·사업·유형별 현황 및 조합원 인식조사 등 현장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조사활동임

6)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결과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주기(3년)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2년)가 불일치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적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일치하게 되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협동조합의 수요와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적기에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협동조합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⁷⁾

-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기획재정부 또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주기를 일치시킴으로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설계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나. 실태조사 관련 자료 요청권 명확화(안 제11조제8항)

현 행	개 정 안
○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의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공 요청권 -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호의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국세청장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기관·법인·단체의 장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자료제출의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행정자료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행정자료조사 수행시 일부 행정자료에⁸⁾ 대해서는 명시적 자료 요청권이 법률에 없어 타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수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중 요구할 수 있는

8)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의 경우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과세정보의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정보의 민감성과 영업상 비밀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필요한 과세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참고 입법례: 과세정보 요청권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열거한 사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⁰⁾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7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9) 기획재정부는 과세정보 및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개별기관 협조공문을 통해 자료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과세정보의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0) 이 외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4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②,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③, 고용보험법 제110조② 등도 과세정보 요청권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였음

3. 조합원이 아닌 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비율 제한 (안 제46조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이 아닌 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u><후단 신설></u>	○ 조합원이 아닌 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 (현행과 같음) <u>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 비율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에 50을 초과할 수 없음</u>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비율을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50%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협동조합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음.¹¹⁾

11) 2014년 법 개정 이전에는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에 대한 상한선을 둬으로써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 운영을 하게 되고 영리기업과의 차별성이 유지되어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 달성과 협동조합의 공동체적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개별 협동조합은 정관을 통해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여부 및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매출액 구성에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0.8%,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3.2%에 그치는 상황임.

[협동조합의 매출액 구성]

(단위: %)

구 분 (유효표본=2,596)	조합원	일반 개인	일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일반협동조합	20.8	27.4	13.2	23.6	5.3	3.8	6.0
사회적협동조합	13.2	24.8	6.5	37.4	8.2	3.2	6.7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p.260

이러한 상황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협동조합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개별 협동조합의 경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12) 기획재정부 또한, 비조합원 사업 이용의 일률적 제한은 조합의 자율성 침해, 수익구조 제한에 따른 경영 악화 가능성 등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6조(사업의 이용) ----- ----- ----- ----- ----- -----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 비율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문 의 처

02)6788-5151